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가단53021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준석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귀근

변론 종결2024. 8. 23.

판결 선고2024. 9. 2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5,363,213원 및 이 중 35,363,178원에 대하여 2023. 7. 28.부터 2023. 10. 26.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23.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39,568,1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39,568,1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1	2019. 7. 16.	8,500,000원	10,000,000원
2	2020. 9. 18.	20,000,000원	20,000,000원
3	2022. 8. 19.	20,000,000원	20,000,000원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는 2023. 4. 6.경 C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23. 4. 2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 7. 28. C 주식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5,526,57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2020. 9. 18.자 신용보증에 대하여는 163,39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5,363,178원이다.

1	2019. 7. 16.	2,824,791원		2,824,791원
2	2020. 9. 18.	12,510,500원	163,394원	12,347,106원
3	2022. 8. 19.	20,191,281원		20,191,281원
35,526,572원		35,363,178원		

마.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23. 7. 28.부터 현재까지 연 8%이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일부 회수된 163,394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35원이다.

바. 피고들은 1976. 7. 13. 혼인한 뒤 2023. 2. 1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2023. 2. 23. 피고 B이 피고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A는 2023. 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5,363,213원(= 대위변제금 잔액 35,363,178원 + 확정손해금 3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5,363,1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10. 26.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있는 이후인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고 이를 대위변제한 때에 비로소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일인 2019. 7. 16.부터 2022. 8. 19. 사이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일인 2023. 2. 23.로부터 43일만인 2023. 4. 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23. 7. 28. C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의 구상금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기간 내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의 재산상태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시흥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피고 A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A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378,000,000	(주)E	83,421,235
조세채무액	58,069,8501) 압류등기가 마쳐진 대한민국에 대한 2023년 1월 귀속분까지의 조세채무액이다.		
임대차보증금	70,000,0002) 임대차보증금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378,000,000	(주)E	83,421,235
반환채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합계	378,000,000		211,491,085

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은 1976. 7. 13. 혼인한 이래 약 4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함께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 B이 기여한 부분이 피고 A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협의이혼한 2023. 2. 10.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들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합계는 166,508,915원3) (= 적극재산 378,000,000원 - 소극재산 211,491,085원)이고 이 중 피고 B의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한 금액은 83,254,457원(= 166,508,915원 × 50%)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르면 피고 B은 기존 자신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에는 아무런 변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53,254,458원(= 이 사건 부동산이 제공하는 책임재산 236,508,915원4) -정당한 재산분할액 83,254,457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같은 액수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었다(비록 피고들이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고들의 자녀인 F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후의 사정이고, 그 채무액수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위와 같이 피고 A가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반하여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 B의 악의

피고 A는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피고 A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들의 관계,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인 피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30. 접수 제95425호로 채권최고액 7천만 원,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8. 23.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9,568,145원이고5),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203,776,105원6) 이나 피고 B이 상당한 재산분할을 초과하여 받은 이익인 153,254,458원보다 적으므로 위 39,568,145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39,568,1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9,568,1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파라

별지

- 1) 압류등기가 마쳐진 대한민국에 대한 2023년 1월 귀속분까지의 조세채무액이다.
- 2) 임대차보증금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 3) 피고 A의 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고, 협의이혼신고일(2023. 2. 10.)이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시(2023. 2. 23.)보다 불과 약 13일 앞선 시기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시 피고 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액수를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 4)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78,000,000원에서 근저당권자 (주)E의 피담보채무액 83,421,235원 및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채권액 58,069,85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5) 35,363,213원 및 이 중 35,363,178원에 대한 2023. 7. 28.부터 2023. 10. 26.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03,398원(= 35,363,178원 × 0.08 × 96/366일), 그 다음날부터 2024. 8. 23.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01,534원(= 35,363,178원 × 0.12 × 302/366일)의 합계액이다.
- 6)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시 기준)와 달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4. 8.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7.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결과 360,000,000원 - 근저당권자 (주)E 대출금채무가 83,421,235원(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1. 29. 기준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시보다 줄었으나, 이를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 - 압류등기가 마쳐진 대한민국에 대한 2023년 7월 귀속분까지의
조세채무액 72,802,660원].